

倒産法制 整備의 現況과 展望

南 庄 祐*

차 례

- I. 倒産法制 整備의 背景과 經過
 - 1. 背 景
 - 2. 經 過
- II. 倒産法制 整備의 基本方向과 主要內容
 - 1. 基本方向
 - 2. 主要內容
 - (1) 會社整理法
 - 1) 開始決定期間의 短縮
 - 2) 節次開始要件의 緩和
 - 3) 節次間의 履行圓滑化와 必要的破産宣告
 - 4) 否認權制度의 整備
 - 5) 整理計劃案의 可決要件緩和
 - 6) 調査委員의 常設化
 - 7) 管理人 또는 調査委員의 解任
 - 8) 經營專門家의 選任
 - 9) 租稅債權의 特惠條項削除
 - 10) 査定의 範圍擴大

(2) 和議法

- 1) 開始決定期間의 短縮
- 2) 節次開始要件의 緩和
- 3) 節次間의 履行圓滑化와 必要的破産宣告
- 4) 和議條件의 履行可能性提高
- 5) 株式會社의 特例棄却事由
- 6) 管財人 또는 整理委員의 解任

(3) 破産法

- 1) 財團債權의 範圍擴大
- 2) 否認權制度의 整備
- 3) 債權者集會期日과 債權調查期日의 併合
- 4) 小破産의 範圍擴大

Ⅲ. 倒産法制 整備의 展望

1. 統合法制定의 必要性
2. 統合法의 制定方向

* 法務部 法務諮問委員會 專門委員, 法學博士

I. 倒産法制 整備의 背景과 經過

1. 背 景

자본주의 경제체제하에서는 모든 기업에 대하여 자유로운 시장진입이 허용되는 반면, 각 기업의 활동은 불특정한 시장수요를 목표로 하여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장수요에 비하여 과다한 기업활동이 전개되는 경우에 경쟁기업간에 생산기술, 경영관리능력 또는 자금조달능력 등의 우열 또는 기업조건의 차이에 의하여 경쟁에서 낙오하거나, 본인의 책임없는 외적 원인으로서의 자연재해, 급격한 환율 또는 경기의 변동이나 국가경제정책의 변경 등 여러 가지 사유에 의하여 도산하는 기업이 나타난다. 기업의 도산은 기업의 경제활동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연적인 사회병리현상이라고 말할 수 있다.

경제적으로 볼 때 도산한 기업은 공평하고 신속하게 회생시키거나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이를 처리하기 위한 도산관계법은 공평하고 신속한 도산처리절차를 마련하여야 한다.

그동안 우리 경제는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왔으나, 최근 외환위기와 아울러 전반적인 경제사정의 악화로 기업의 도산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오랫동안 거의 이용되지 않았던 회사정리법과 화의법 등 도산관련 법제들의 실무상 활용이 급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관리부담의 가중과 절차지연 등의 사유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고 관리대상기업의 갱생률도 극히 저조하다는 지적이 각계로부터 제기되었다. 또 도산관련 법률과 제도의 비효율성도 문제되었다. 나아가 IBRD 등 국제기구들도 우리 나라 도산관련법률의 혁신적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법무부는 1998년 2월에 법원의 전문성을 보완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각종 기한을 규정하여 절차를 단축하는 한편,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투자환경을 조성하고, 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하며, 기업갱생을 제고하기 위하여 회사정리법을 개정하고, 화의절차개시신청의 기각요건을 확대함으로써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여 화의제도를 이용하기에 부적절한 주식회사가 회사갱생에 비효율적이지만 경영권 유지에는 도움이 되는 화의제도를 선호하고 회사갱생을 위한 제도인 회사정리절차를 외면하는 현상을 시정하는

한편, 각종 기간을 법정하여 절차를 단축하고, 채권자의 취소신청권을 인정하는 등 채권자의 권한과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화의제도가 왜곡운용되고 있는 현상을 시정하고, 합리적이고 신속한 기업구조조정을 유도하기 위하여 화의법을 개정하였으며, 파산사건의 관할을 다른 도산관련사건과 동일하게 하고, 관리위원회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법원의 업무부담을 덜어주고 도산관련 사건처리가 원활하고 합리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산법을 개정한 바 있다.

그러나 여전히 외국에 비하여 절차가 늦고 이용조건이 까다롭다는 각계의 지적이 있고, 1998년 7월 IBRD와의 제2차 구조조정차관(SALII)협상에서 절차를 신속하게 하는 도산관련법률 개정을 합의한 바 있어 법무부는 도산위기에 처한 기업들의 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2. 經 過

법무부는 1998년 9월부터 동년 12월까지 14회에 걸쳐 법원,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은행감독원, 한국개발연구원, 법제연구원 소속 실무자로 구성된 실무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개정시안을 작성하고, 금년 1월에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계부처 국장, 부장판사, 교수 등으로 구성된 기업정리관련 법률개정특별분과위원회를 5회(소위원회 3회 포함)에 걸쳐 개최함으로써 개정시안을 마련하였다.

법무부는 금년 2월에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4월 14일에 공청회를 개최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금년 내에 국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II. 倒産法制 整備의 基本方向과 主要內容

1. 基本方向

이번 도산관련법률의 개정은 (i) 도산관련 법적 절차의 이용 확대, (ii) 절차의 신속성 제고, (iii) 기업갱생계획의 수행가능성 제고, (iv) 채권자간의 공평성 도모, 및 (v) 파산제도의 정비를 목표로 한다.

현행 회사정리와 화의제도는 부실기업들이 개시결정을 받아 절차에 진입하는 것 자체가 너무 힘들어 갱생의 기회를 잡기 어려운 반면, 갱생가망성이 없

어 회사정리절차나 화의절차가 성공하지 못한 회사에 대해서도 파산선고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부실기업의 퇴출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개정시안은 회사정리와 화의의 개시요건을 완화하여 갱생을 원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단기간 내에 모두 개시결정을 하여 주되, 절차가 불성공하거나 갱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명될 경우에는 반드시 파산선고를 함으로써 즉시 그 기업을 퇴출시킬 수 있도록 하여 법적 절차의 이용 확대와 절차의 신속성 제고를 추구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개정시안은 정리에획안의 가결요건을 완화하여 소수 채권자의 부당한 버티기(hold-out)로 인한 불합리한 정리에획안의 작성을 방지하고, 조사위원을 상설화하여 법원에 대한 보조역할을 강화하며, 관리인을 보좌할 경영전문가의 선임 등을 통하여 기업갱생계획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하고 정리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도모하고 있다.

또 부인권행사를 활성화하여 채무자와 특정채권자의 담합행위를 방지하고 조세채권의 특혜조항을 삭제하여 채권자간의 공평성을 도모하고 있다.

아울러 개정시안은 파산자의 피용자의 급료, 퇴직금, 임치금과 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을 재단채권에 추가함으로써 근로자를 보호하고 소파산제도의 활용도를 제고하는 등 파산제도를 정비한다.

2. 主要内容

(1) 會社整理法

1) 開始決定期間의 短縮

개정시안은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간을 1월내로 단축한다.

현행 회사정리법은 신속하게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중소기업에 대하여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일부터 3월내에, 만약 관리위원 이외의 자가 조사위원으로 선임된 경우에는 5월내에 정리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회사정리법 제45조의2).

현행 회사정리법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에 정하여진 중소기업(동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으로 보는 회사(의제중소기업)를 제외함)에 해당하지 않는 기업(대기업)의 경우에는 개시결정기간을 법정하지 않고 있는데, 이는 중소기업과 달리 그 규모의 제한이 없으므로 일률적으로 조사기간 등을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절차개시의 시한을 정한 것은 회사정리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나, 이 규정은 법원의 절차처리시한에 관한 다른 규정과 마찬가지로 강행규정이 아니라, 훈시규정으로 되어 있다.

현행 회사정리법상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신청서·첨부서류의 조사(동법 제32조, 제33조), 감독행정청·금융감독위원회·조세징수권자로부터의 의견청취(동법 제35조), 회사대표자의 심문(동법 제36조) 등을 하고, 직권으로 필요한 조사를 하며(동법 제9조),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정리절차개시의 적당 여부 등을 조사하게 한다(동법 제40조). 이와 같은 조사절차로 인하여 개시결정기간은 보통 신청후 5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이에 대하여 개정시안은 중소기업과 대기업을 구별하지 않고 회사정리절차의 신청일부터 1월내에 정리절차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다(회사정리법안 제45조의2).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1월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후 개시 여부를 결정한다(동법안 제38조).

법원은 정리절차개시결정후 필요한 경우 조사위원을 선임하는 등의 방법으로 조사(동법안 제181조의2)를 한 후 그 조사결과에 따라 개시결정일로부터 4월내에 제1회의 관계인집회를 개최하여 그 기일에 또는 그후 지체없이 정리계획안 제출명령을 하거나(동법안 제189조), 회생가능성이 없으면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하거나(동법안 제271조의3), 청산형 계획안의 작성을 허가한다(동법안 제191조).

법원이 조사절차를 거쳐 정리절차폐지의 결정을 한 때에는 파산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필요적 파산선고)(동법안 제23조).

2) 節次開始要件의 緩和

개정시안은 절차개시의 요건을 완화하여,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신청기각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진입 내지는 절차의 이용을 대폭 확대하고 있다.

현행 회사정리법상으로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38조가 규정하고 있는 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동법 제38조가 규

정하는 요건 중 가장 중심적인 것은 절차개시의 실질적 요건으로서 “회사를 청산할 때의 가치가 회사를 계속 존속시킬 때의 가치보다 큰지 여부”(동법 제38조제5호)이다. 법원은 이를 직접 조사할 수 있으나, 필요한 경우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1인 또는 수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사하게 하며, 정리절차개시의 적당 여부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이에 대하여 개정시안은 절차개시의 요건 중 이와같은 사업계속가치¹⁾와 청산가치의 비교를 삭제하기로 하였다(동법안 제38조). 따라서 개정시안상 정리절차개시의 요건은 형식적 요건이며,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신청기각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이 절차개시의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신청후 1월내에 개시결정을 할 수 있게 된다.

현행법상 개시결정전에 하던 조사절차를 앞으로는 개시결정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필요한 경우에 한함) 진행한다. 종전에는 정리절차의 개시결정이 기업회생의 신호(Signal)로 이해되어 왔으나, 개정시안에 의하면 개시결정이 단순한 절차의 개시를 의미할 뿐이고, 개시결정후 조사절차를 거쳐 회생 또는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3) 節次間의 履行圓滑化와 必要的破産宣告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경우에는 회사에 파산원인이 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현행법상으로 이와 같은 경우에 당연히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은 아니고 법원이 재량에 따라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할 수 있다(동법 제23조). 그러나 실무상으로는 파산선고를 하는 예가 드물다. 이와 같은 경우에 당연히 파산절차로 이행하지 않는 점에서 화의절차의 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당연히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점과 다르다(화의법 제9조 참조).

또 파산선고후의 회사에 관하여 정리절차개시신청기각, 정리계획인가전의 정리절차폐지(회사정리법 제272조, 제273조)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중지되었던 파산절차가 당연히 속행되며, 정리계획인가후에 정리절차폐지(동법 제276조)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동법 제25조, 제26조).

1) 이를 존속가치 또는 계속기업가치라고도 한다.

이와 같이 파산절차로 이행한 때에는 공익채권을 재단채권으로 보며(동법 제24조~제26조), 파산선고전의 회사에 관하여는 정리절차개시결정 또는 회의개시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할 회사의 이사 또는 이에 준하는 자의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동법 제24조). 그밖의 점에 있어서는 정리절차에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개정시안은 정리절차폐지 또는 정리계획불인가의 경우에는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함과 아울러(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제외),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에 정리절차에서 이미 완료된 절차, 처분 또는 행위 등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인정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안 제23조~제26조).

결국 개정시안에 의하면 법적 절차가 개시된 이후에는 기업의 회생가능성 여부에 따라 회생 또는 청산의 중국결정을 반드시 내리도록 하고 중도에 법적 절차에서 빠져나갈 수 없게 된다.

또 개정시안은 회사정리절차에서 파산절차로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고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정리채권의 신고, 조사, 이의 또는 확정을 이행된 파산절차에서의 파산채권의 신고, 조사, 이의 또는 확정으로 보고(의결권행사를 위한 정리채권액 산정의 대상인 채권의 신고, 조사, 이의 및 확정을 제외), 관리인이 수행하던 소송절차는 중단 및 수계되며, 정리절차에서 행하여진 법원, 관리인, 보전관리인, 조사위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채권자협의회,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주주 기타 이해관계인의 처분이나 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효력이 있도록 하고 있다(동법안 제24조~제26조). 그러나 정리계획인가후의 정리절차폐지에 의한 파산절차에서는 정리채권의 신고, 조사, 이의 또는 확정을 파산채권의 신고, 조사, 이의 또는 확정으로 보지 않는다(동법안 제26조 참조). 이 경우에는 이미 정리채권의 변제 등이 이루어져 정리채권액과 파산채권액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否認權制度的整備

개정시안은 부인권제도를 정비한다. 현재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인권 행사를 활성화하여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의 담합에 의한 전체 채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회사사업의 정리재건을 도모하는 회사정리법의 목적을 원활하게 달성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법은 회사재산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인권행사를 인정하고 있는데, 부인권이란 회사정리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정리절차개시 후 관리인이 그 행위의 효력을 부인하고 감소한 재산과 기업의 수익력을 회복하거나 채권자간의 평등을 회복할 것을 목적으로 하는 권리이다.

현행법상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는 3종이 있는데, (i) 회사가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를 해할 것을 알고 한 행위(악의부인 또는 고의부인)(동법 제78조 I i), (ii)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후에 한 정리채권자 또는 정리담보권자의 사해행위와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동조 I ii), 또는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3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서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회사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 행위(위기부인 또는 위태부인)(동조 I iii), (iii)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후 또는 그 전 6월내에 한 무상행위(증여, 권리포기, 채무면제, 보증 등)와 이와 동시하여야 할 유상행위(매매 또는 양도담보의 목적물가액과 매매대금 또는 피담보액의 현저한 균형 상실)(무상행위부인)(동조 I iv)로 구분된다.

개정시안은 상술한 위기부인 중 후자의 행위, 즉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기 전 3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를 회사가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 화의개시 또는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기 전 60일내에 한 담보의 제공 또는 채무의 소멸에 관한 행위로 개정하여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의 범위를 확대한다(동법안 제78조 I iii).

또 개정시안은 관리인이 부인권행사를 게을리하는 경우에 정리채권자, 정리담보권자 또는 주주가 법원에 신청하여 법원이 관리인에게 부인권행사를 명할 수 있도록 한다(동법안 제82조 II).

개정작업 당시에는 정리절차개시신청전 일정기간(예를 들면 30일 또는 60일)에 행한 분지변제(회사의 본래의 의무에 속하는 변제)도 부인하는 문제를 검토하였으나, 부인권제도의 전반을 체계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다음 개정시의 과제로 남겨두었다.

5) 整理計劃案의 可決要件緩和

관계인집회에서 정리계획안이 가결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i) 정리채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그 의결권총액의 3분의 2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정리채권자의 동의, (ii) 정리담보권자의 조에 있어서는 정리담보권의 기한의 유예를 정하는 계획안에 관하여는 그 의결권총액의 4분의 3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의 동의, 정리담보권의 감면 기타 기한의 유예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정하는 계획안에 관하여는 그 의결권총액의 5분의 4이상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정리담보권자의 동의, 청산형 계획안에 관하여는 정리담보권자의 전원동의, (iii) 주주의 조에 있어서는 주주의 의결권총수의 과반수에 해당하는 의결권을 가진 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동법 제205조).

현행규정상의 가결요건은 외국의 경우에 비해 매우 높다. 또 정리담보권자가 동시에 정리채권자인 경우가 많은데, 정리채권자로서 불리한 계획안에 대하여 정리담보권자조의 의결권행사에서도 반대하는 경우가 있다. 정리담보권자조의 가결요건이 훨씬 높아서 부결시키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일부 담보채권자의 불합리한 반대로 인하여 절차가 지연되고 정리계획안이 가결되지 못하여 부당하게 채무자의 회생기회를 상실하게 될 염려가 있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다. 또 절대다수의 찬성을 얻기 위하여 성공가능성이 희박한 정리계획안을 작성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결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개정시안은 정리담보권자조의 가결요건에 있어서 정리담보권의 기한의 유예를 정하는 계획에 관하여는 그 의결권총액의 3분의 2이상, 정리담보권의 감면 기타 기한의 유예 이외의 방법에 의하여 그 권리에 영향을 미칠 내용을 정하는 계획안에 관하여는 그 의결권총액의 4분의 3이상의 동의를 얻도록 하여 정리담보권자조의 가결요건을 완화한다(동법안 제205조).

6) 調査委員의 常設化

현행 회사정리법상으로 법원은 정리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조사에 필요한 학식, 경험이 있는 자로서 이해관계가 없는 자 중에서 1인 또는 수인의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일정한 기

간에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게 하며, 정리절차개시의 적당 여부에 관하여 의견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동법 제40조).

조사위원은 화의절차에서의 정리위원과 달리 필요적 기관이 아니라, 법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만 선임하는 임의기관이나, 실무상으로는 예외없이 선임하고 있다.

이와 같은 조사위원은 개시결정전에 의견서를 제출함으로써 그 임무가 종료한다.

그러나 개정시안은 법원이 형식적 요건만을 조사하여 개시결정을 한 후, 조사위원을 선임하여 조사절차를 진행하되, 이를 상설화하여 조사보고서와 의견서의 제출 이외에도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수시로 조사·보고하게 할 수 있게 한다(동법안 제181조의2). 법원이 필요로 하는 사항이란 정리계획안의 수행가능성 조사 등을 말한다.

개정시안에 의하면 조사위원의 조사절차와 채권신고를 병행할 수 있기 때문에 조사보고서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조사위원을 상설화함으로써 그 조사결과를 정리계획안 작성에 반영하여 활용도를 높일 수 있게 한다.

7) 管理人 또는 調査委員의 解任

현행 회사정리법상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동법 제44조, 제101조). 이 경우 “중요한 사유”가 무엇인지는 사건에 따라 개별적으로 정하여질 것이나, 예를 들면 수회의 사실이라든지 허위의 의견제출 등이 이에 해당할 것이다.

이와 같은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의 자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보다 책임자가 나타날 경우에도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을 해임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중요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만 법원이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을 해임할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임할 수 있도록 개정한다(동법안 제98조의5, 제181조의3).

8) 經營專門家の 選任

정리절차의 진행에는 법률적인 전문지식이 불가결하기 때문에, 법률전문가

가 아닌 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된 경우에 관리인의 직무수행에 불가결한 법률적인 지식을 보조하기 위하여 현행 회사정리법은 관리인의 법률문제에 관한 상담역으로서 법률고문제도를 두고 있다. 즉 관리인은 필요한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 법률고문을 선임할 수 있다(동법 제186조). 정리절차에서 생기는 여러 가지 법률문제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함으로써 관리인을 보좌하는 법률고문의 자격에는 제한이 없으나, 실무상으로는 정리사건의 신청인 대리인이 법률고문으로 되는 예가 많다.

한편 정리절차의 원활한 진행과 정리회사의 조속한 정상화를 위하여는 법률적인 지식뿐만 아니라, 기업경영에 관한 식견, 회계에 관한 전문지식 또는 M&A에 관한 전문지식 등이 필요하다. 따라서 개정시안은 이와 같은 전문지식을 가진 경영전문가를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고문으로 선임하여 자문할 수 있도록 한다(동법안 제186조).

나아가 M&A 등을 위한 특별대리인의 선임도 입법론상 고려할 수 있는 문제이나,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관리인과 권한의 충돌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이번 개정에서는 보류되었다. 그러나 현행법하에서도 M&A를 위한 관리인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9) 租稅債權의 特惠條項削除

개정시안은 체납처분 등의 중지명령에 대한 예외조항을 삭제한다.

현행 회사정리법상으로 법원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정리절차개시결정이 있기 전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징수권한을 가진 자의 의견을 들은 후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의 중지를 명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중지결정은 강제집행 등의 중지명령과 달리 예외적으로 효력존속기간이 정해져 있는데, 이와 같은 중지결정은 정리절차개시의 신청에 관하여 결정이 있을 때 또는 중지결정의 날부터 5월을 경과하면 그 효력을 잃는다(동법 제37조).

개정시안에 의하면 정리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을 정리절차의 신청일부터 1월 내에 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동법안 제45조의2), 이와 같은 예외조항은 의미를 잃게 된다. 개시신청후 1월내에 개시결정이 있으면 체납처분 등이 자동적으로 중지되며(동법 제67조), 1월내에 개시신청기각의 결정이 있으면 중지된 체납처

분은 다시 진행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정시안은 이 조항을 삭제한다(동법안 제37조 III).

또 현행 회사정리법상으로 정리채권 또는 정리담보권에 관하여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변제하거나 변제받거나 기타 이를 소멸하게 할 행위(면제를 제외)를 하지 못하나, 국세징수법 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할 수 있는 청구권에 관하여는 그 채납처분이나 담보물권의 처분 또는 그 속행이 허용되는 경우,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를 당한 회사의 채권(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채권을 포함한다)에 관하여 그 채납처분의 중지 중에 제3채무자가 징수의 권한을 가진 자에게 임의로 이행하는 경우와 관리인이 법원의 허가를 얻어 변제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채납처분 또는 조세채무의 변제가 허용된다(동법 제112조).

이 규정은 조세채권을 일반채권에 비하여 우대하는 규정이나, 특히 그중에서도 채납처분에 의한 압류채권의 제3채무자가 채납처분에 대한 중지 중에도 압류한 징수권자에 대하여 임의변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규정은 특히 조세채권의 우월성이 두드러진다.

개정시안은 채권자간의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세채권을 일반채권에 비하여 현저하게 우대하는 이와 같은 특혜조항을 삭제한다. 따라서 앞으로는 채납처분에 대한 중지 중에는 조세채권자에 대한 제3채무자의 임의변제도 금지된다(동법안 제112조).

10) 査定の 範圍擴大

현행 회사정리법은 이사, 감사, 발기인, 청산인 등 회사기관의 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사정과 보전처분제도를 두고 있다. 정리절차에서 사정과 보전처분제도에 의하여 회사기관의 책임을 추궁하는 이론적 근거는 정리절차가 회사의 회생을 위해서 채권자, 주주 등의 회생을 강요하고 있는 이상, 책임이 있는 이사 등에 대해서도 책임추궁을 하는 것이 공평의 견지상 타당하다는 점과 정리절차가 개시되더라도 회사재산이 충실하지 않으면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회사재산을 충실하게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는 점이다.

현행 회사정리법상 사정이란 정리절차개시의 결정이 있을 때에 발기인·이사·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에 대한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그 책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유무를 조사하여 그 금액을 정하고 그 지급을 명하는 재판

절차이며, 보전처분이란 이와 같은 주금납입청구권 또는 손해배상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그 발기인·이사·감사·검사인 또는 청산인의 재산에 대하여 하는 가압류·가처분 기타 필요한 보전처분을 말한다(동법 제72조).

이 경우 이사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이란 상법 제399조와 제42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말하는데, 1998년 상법개정법률에 의하면 동법 제399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업무집행지시자를 이사로 보게 되었다. 업무집행지시자란 회사에 대한 자신의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사에게 업무집행을 지시한 자, 이사의 이름으로 직접 업무를 집행한 자 또는 이사가 아니면서 명예 회장·회장·사장·부사장·기획조정실장·전무·상무 기타 회사의 업무를 집행할 권한이 있는 것으로 인정될 만한 명칭을 사용하여 회사의 업무를 집행한 자를 말한다(상법 제401조의2).

따라서 회사정리법상 사정의 대상이 되는 손해배상청구권에는 상법상 이사로 간주되는 업무집행지시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기 때문에 개정시안은 이를 사정의 대상에 추가하고 있다(동법안 제72조).

(2) 和議法

1) 開始決定期間의 短縮

개정시안은 화의개시결정의 기간을 정리절차개시결정의 기간과 같이 1월내로 단축한다.

현행 화의법은 신속하게 개시결정이 이루어지도록 화의개시 신청일부터 3월내에 화의개시 여부의 결정을 하되,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이 1월의 범위 안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화의법 제26조의2). 이와 같이 절차개시의 시한을 정한 것은 화의절차가 지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현행 화의법상으로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신청서·첨부서류의 조사(동법 제13조) 등을 하고,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채무자의 재산, 장부 및 화의의 조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를 하게 하며, 화의의 개시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동법 제21조).

이에 대하여 개정시안은 화의개시의 신청일부터 1월내에 화의개시 여부의 결정을 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안 제26조의2). 법원은 화의개시의 신청이 있으

면 1월내에 개시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기 때문에, 실질적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고 형식적 요건만 심사한 후 개시여부를 결정한다(동법안 제21조, 제39조의2).

법원은 회의개시결정후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한 후(동법안 제39조의2), 그 조사결과에 따라 회의폐지의 결정을 하거나(동법안 제63조), 채권자 집회의 가결을 거쳐 회의의 인부에 관하여 결정하는데(동법안 제54조), 정리위원의 조사결과 채무자가 회의조건을 이행할 가망(회생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채권자집회전이라도 회의폐지의 결정을 하여야 하며, 회의의 가결전에 회의의 제공자가 그 제공을 철회하거나 채권자집회의 제1회 기일로부터 2월내에 회의를 가결하지 아니한 때에도 이와 같다(동법안 제63조).

법원은 회의폐지 또는 회의불인가의 결정을 한 때에는 파산원인이 있으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필요적 파산선고)(동법안 제9조).

현행 회의법상으로는 정리위원의 조사를 거쳐 회의를 기각한 때에도 법원이 반드시 파산을 선고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개정시안에 의하면 회의개시의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개시결정을 하기 때문에, 회의를 기각하는 경우가 매우 적어지는 반면, 회의개시후 회의가 폐지되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에 회의를 신청한 후 파산절차로 들어가게 되는 기업이 많아질 가능성이 있다. 특히 회의폐지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없기 때문에 파산절차가 계속 진행된다(동법 제7조).

2) 節次開始要件의 緩和

개정시안은 절차개시의 요건을 완화하여,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신청기각사유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을 하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진입 내지는 절차의 이용을 대폭 확대한다.

현행 회의법상으로 회의개시의 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개시결정을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동법 제12조·제18조·제19조와 제19조의2 등이 규정하고 있는 절차개시의 요건이 구비되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절차개시의 요건 중 가장 중심적인 것은 실질적 요건으로서 회의원인의 존부(동법 제12조), 회의조건에 당부와 회의성립의 가능성이다. 법원은 이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리위원회 의견 등을 들어 정리위원을 선임하여 기간을 정하여 이를 조사하게 하고 회의를 개시하는 여부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여야 한다(동법 제21조).

이에 대하여 개정시안은 정리위원의 선임과 이에 의한 조사를 절차개시후로 변경함으로써 절차개시 여부의 결정은 형식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청기간사유가 없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개시결정을 하도록 하고, 화의개시의 결정과 동시에 관리위원회와 채권자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정리위원을 선임하며(동법안 제27조), 선임후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화의위원의 존부, 화의조건인 당부와 화의성립의 가능성 등 실질적 요건을 조사하게 하고 이에 관한 의견서를 제출하게 한다(동법안 제39조의2). 따라서 개정시안에 의하면 개시결정은 형식적 요건으로서의 개시요건만을 심사하여 신청후 1월내에 하게 된다.

현행법상 화의개시의 결정이 기업회생의 신호로 이해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개시결정이 단순한 절차의 개시를 의미할 뿐이고, 개시결정후 조사절차를 거쳐 회생 또는 청산 여부가 결정된다.

3) 節次間의 履行圓滑化와 必要的破産宣告

현행 화의법상으로 화의개시가 확정된 후 화의폐지결정이 있을 때(화의법 제63조, 제64조), 화의불인가결정이 확정된 경우(동법 제55조) 또는 화의인가확정후에 화의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경우(동법 제67조, 제68조)와 같이 파산예방으로서의 화의절차가 불성공으로 종결이 되어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한 경우에 파산의 원인이 있으면 법원은 이미 파산의 신청이 있었던 때에는(동법 제17조) 그 신청에 의하여, 파산의 신청이 없었던 때에는 직권으로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를 하여야 한다(필요적 파산선고)(동법 제9조). 이와 같이 화의절차나 회사정리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이행하는 것을 견련파산 또는 관련파산이라고 한다.

현행 화의법상으로는 화의절차에서 파산절차로 이행한 때에는 화의를 위하여 생긴 채권과 화의절차의 비용을 재단채권으로 보며, 화의개시나 화의취소의 신청 또는 사기파산의 죄에 해당할 화의신청인의 행위를 지급의 정지 또는 파산의 신청으로 본다(동법 제10조). 그밖의 점에 있어서는 화의절차에서 이미 진행된 절차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처음부터 파산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이에 대하여 개정시안은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경우에 법원이 반드시 파산선고를 하도록 하되(파산원인이 없는 경우 제외)(현행규정과 같음), 불필요한 절차의 중복을 피하기 위하여 파산절차로 이행된 경우에 화의절차에서 이미 완료된 절차, 처분 또는 행위 등의 효력을 파산절차에서 인정되도록

정하고 있다(동법안 제10조).

즉 개정시안에 의하면 화의폐지, 화의불인가 또는 화의취소의 결정후 파산절차로 이행한 때에는 화의채권의 신고는 파산채권의 신고로 보며, 화의절차에서 행하여진 법원, 관재인, 보전관재인, 정리위원, 관리위원회, 관리위원, 채권자협의회, 화의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의 처분이나 행위 등은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 한 파산절차에서도 효력이 있다(동법안 제10조). 그러나 화의인가후의 화의절차폐지 또는 화의취소의 경우에 파산절차로 이행한 때에는 화의채권의 신고를 파산채권의 신고로 보지 않는다(동법안 제10조 II). 이 경우에는 이미 화의채권의 변제 등이 이루어져 화의채권액과 파산채권액간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4) 和議條件의 履行可能性提高

현행 화의법상으로 화의신청인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화의조건을 변경할 수 있으나(동법 제13조),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조건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화의채권자를 이롭게 하는 경우에 한하여 이를 할 수 있다(동법 제53조, 파산법 제274조). 현행 화의법이 채권자집회에서 화의채권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주는 화의조건변경이 허용되지 않도록 제한한 이유는 이미 화의조건에 대한 심리가 끝난 이해관계인에게 변경에 대한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가 보장되지 못하기 때문으로 볼 수 있을 것이나, 실무상으로 화의조건변경의 심리와 가결이 보통 동일한 기일에 행하여지고 있으며, 이행가능성이 높은 화의안을 만들기 위하여는 필요한 경우에 채권자를 불리하게 하는 내용이라도 화의조건을 변경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 따라서 개정시안은 이와 같은 제한을 삭제한다(동법안 제53조, 제28조 III).

5) 株式會社의 特例棄却事由

현행 화의법은 주식회사의 화의신청에 대한 특례기각사유를 정하고 있는데, 채무자인 주식회사의 재정적 파탄의 원인이 이사나 이에 준하는 자 또는 지배인의 회사재산의 유용·은닉 또는 중대한 부실경영의 행위에 기인한 때 또는 채무자의 자산·부채의 규모가 크거나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수가 많은 등 제반사정에 비추어 화의절차에 의함이 부적합한 때에는 법원은 화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동법 제19조의2).

회의법이 주식회사의 특례기각사유를 정한 이유는 채권자의 양보를 본질적 요소로 하는 회의절차에 의하는 것이 부적절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이를 회의절차에서 배제하고 가급적 회사정리절차를 이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그런데 고의적인 부실경영에 한하여 회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기각사유의 범위가 과도하게 제한되고 판단의 곤란이 문제되어 실무상 이를 활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다. 따라서 개정시안은 고의성이 없더라도 이사 등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 파탄이 발생한 경우에는 회의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도록 한다(동법안 제19조의2).

나아가 회의개시의 결정 후라도 특례기각사유가 발견된 때에는 절차를 폐지할 수 있도록 하여 회의절차를 이용하는 것이 부적절한 주식회사에 대하여는 가급적 회사정리절차를 이용하도록 유도한다(동법안 제64조).

6) 管財人 또는 整理委員의 解任

현행 회의법상 중요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여 또는 직권으로 관재인 또는 정리위원을 해임할 수 있다(동법 제29조, 제34조).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의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의 해임사유와 같다.

회사정리절차에서의 관리인 또는 조사위원과 같이 회의절차에서의 관재인 또는 정리위원에 관하여 중요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 그 자질에 문제가 있을 경우 또는 보다 책임자가 나타날 경우에도 관재인 또는 정리위원을 해임하여 교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에, 개정시안은 “중요한 사유”를 “상당한 이유”로 개정한다(동법안 제37조의2, 제39조의5).

(3) 破産法

1) 財團債權의 範圍擴大

재단채권(파산법 제38조)이란 주로 파산선고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파산자에 대한 청구권을 말한다. 재단채권은 회사정리법에 있어서의 공익채권(회사정리법 제208조)과 거의 같은 성질을 가지고, 그 범위도 유사하나, 전부 일치하지는 않는다. 재단채권과 공익채권은 파산절차 또는 정리절차에 의하지 않고 수시로 변제한다(파산법 제40조, 회사정리법 제209조).

현행 회사정리법은 근로자의 보호를 위하여 정리절차개시 이전의 원인에 기하여 생긴 근로자의 급여·퇴직금과 근로자의 임차금·신원보증금의 반환청구권도 공익채권으로 하고 있으나, 파산법은 이를 재단채권으로 하고 있지 않아서 균형을 잃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따라서 개정시안은 근로자보호를 위한 회사정리법 제208조제10호·제11호와 균형을 맞추기 위하여 이를 재단채권의 범위에 추가한다(파산법안 제38조).

2) 否認權制度的 整備

회사정리절차에 있어서와 같이 파산절차에서도 부인권제도를 정비한다. 거의 활용되지 않고 있는 부인권행사를 활성화하여 채무자와 특정 채권자의 담합에 의한 전체 채권자의 피해를 방지하고 채권자간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파산법상의 부인권제도는 회사정리법상의 부인권제도와 그 규정이나 내용에서 차이가 없다(파산법 제64조 이하와 회사정리법 제78조 이하 참조).

이번 파산법 개정시안의 부인권제도 개정내용도 회사정리법 개정시안의 부인권제도 개정내용과 같다(회사정리법 개정내용 참조).

3) 債權者集會期日과 債權調査期日의 併合

현행 파산법상 파산선고가 있으면 파산채권자의 채권신고와 채권조사를 행하고 제1회 채권자집회를 소집하게 되는데, 채권신고의 기간은 파산선고일부터 2주일 이상 4월 이하의 기간, 채권조사기일은 채권신고기간의 말일로부터 1주일 이상 1월 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하며, 제1회 채권자집회는 파산선고일로부터 1월내에 소집하여야 한다(파산법 제132조 I).

이 경우 법원은 제1회의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다(파산법 제132조 II). 그러나 채권신고의 기간은 보통 1개월 정도가 소요되므로 그 말일로부터 1주일 이상의 기간이 있어야 하는 채권조사기일을 제1회 채권자집회기일과 병합하는 것이 실무상 곤란하다.

따라서 개정시안은 파산선고일로부터 1월 이내에 소집하도록 되어 있는 제1회의 채권자집회를 파산선고일로부터 2월 이내에 소집할 수 있도록 하여 제1회의 채권자집회기일과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절차의 중복을 피하고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한다(파산법안 제132조).

4) 小破産의 範圍擴大

현행 파산법은 파산재단의 액이 근소하여 보통의 파산절차를 행하는 것이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고 헛된 노력을 소모하여 비경제적일 경우에 간이한 절차인 소파산절차를 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파산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있는데, 현행 소파산의 요건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500만환 미만이라고 인정될 경우로 하고 있다(파산법 제330조).

500만환은 현재 50만원으로서 소파산의 범위가 너무 협소하여 실무상 거의 이용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개정시안은 금액을 현실화하기 위하여 이를 2억원으로 확대한다(동법안 제330조).

Ⅲ. 倒産法制 整備의 展望

1. 統合法制定의 必要性

이번 도산관련법률의 개정과 관련하여 각계로부터 통합법을 제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통합법의 제정을 위하여는 법체계 전반에 걸친 연구·검토가 필요한데, 개정일정상의 시간적 제약으로 인하여 다음 개정시의 과제로 미뤄 두었다.

통합법의 제정은 선진각국의 추세이다. 미국은 1978년에 종전의 구법(Bankruptcy Act)을 대체하는 연방파산법(Bankruptcy Code)을 제정하면서 기업회생절차를 단일한 절차로 통합하였으며, 독일은 1978년에 도산법전문가위원회를 설치한 이래 약 16년에 걸쳐 도산법개정작업을 추진한 결과 1994년에 통합도산법(Insolvenzordnung)을 제정·공포하여 금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영국도 1986년에 각각의 단행법으로 존재하던 도산관련법률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며, 프랑스도 1985년에 일원적인 도산절차를 채용한 “기업의 사법적 경쟁 및 청산에 관한 법률(LOI n. 85-98 du 25 janvier 1985 relative aux redressement et à la liquidation judiciaire des entreprises)”을 제정한 바 있다.

회사정리절차와 화의절차는 모두 기업회생절차로서 신속성과 효율성을 위하여 하나의 법률체계하에서 운용될 필요가 있다. 또 기업회생절차와 청산절차

는 별개의 제도가 아닌 하나의 스펙트럼의 양극이라고 이해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기 때문에 양자를 하나의 법률체계하에서 운용하는 것이 절차간의 이행을 원활하게 하는 등 신속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회사정리법, 화의법과 파산법을 통합할 필요가 절실하다고 본다.

이번 도산관련법률의 개정이 금년에 완료되면, 곧 통합법의 제정작업에 착수하여 장기에 걸친 제정작업이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2. 統合法의 制定方向

그동안 우리는 비약적인 경제발전으로 인하여 기업의 파산과 파산자에 대한 경험적·사회적·규범적 판단이 정립되지 않았으며, 도산절차와 파산법원의 역할과 기능에 대하여도 명확하게 정립된 입장이 없다. 따라서 통합법을 제정함에 있어서는 도산절차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부터 정립하여야 한다.

또 통합법의 제정을 위하여 선진각국의 입법례를 참조함에 있어서는 우리 사회의 특유한 경제적·규범적 현실과 가치관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그러나 도산절차의 신속성과 효율성은 경제의 원활한 발전과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절대적 요건임을 명심하여야 한다.

통합도산법의 구체적인 제정방향에 관하여는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으나, 파생금융상품에 관한 규정의 신설, 부인권제도의 전면적 정비, 국제도산에 관한 규정의 정비 등 이번 개정에서 제외된 논점들을 포함함과 아울러, 파산법원의 설치 여부, 도산절차의 개시신청을 일원화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절차를 선정하게 할 것인가 아니면 신청인에게 절차의 선택을 허용하고 절차간의 이행을 원활하도록 개선할 것인가의 여부, 화의제도의 존폐 여부, 채무자(debtor-in-possession : DIP)에게 경영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여부, 자동적 중지제도(automatic stay)를 채택할 것인가의 여부, prepackaged 절차의 채택 여부, 강제인가(cramdown)와 절대우선의 원칙(absolute priority rule)의 채택 여부, 기업회생을 위한 지원자금의 우선채권 인정 여부, 금융기관에 대한 특별갱생절차의 허용 여부, 중소기업을 위한 특별갱생절차의 신설 여부, 소비자파산제도의 신설 여부 등이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

앞으로 추진될 도산법의 통합작업과 관련하여 도산관련 전문가와 학계 등으로부터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 바람직한 제정방향에 대한 고견이 많이 제시되기를 기대한다.